

□ 사단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정관

2007. 12. 12 제정

2008. 10. 17. 개정

2009. 04. 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회원도서관(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상호협력 및 정책공조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증대하고, 대학도서관 직원의 친목도모, 지식배양 및 지위향상을 실현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나아가 한국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이하 “대학도서관연합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칭과 약칭은 각각 “The Korea University & College Library Association”과 “KUCLA”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2-1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발전정책에 대한 공조
2. 대학도서관의 업무 표준화 및 협조체계 구축
3. 학술정보의 교류 및 서비스 협력
4. 학술발표회(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및 후원
5. 회보, 연구보고서, 편람 등의 출판
6. 대학도서관 직원의 지식배양 및 지위향상
7. 대학도서관 직원의 친목도모 및 교류
8.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본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회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의 도서관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 당시의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라 한다)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정회원 : 정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단체회원인 대학도서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도서관으로서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
- 2.준회원 : 준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단체회원이 아닌 회원 또는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이 아닌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회원으로 한다.

③본회에는 단체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회원에 대한 상벌)①본회에 크게 공헌한 회원 및 유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제명처분 된 회원은 처분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본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3인
- 3.이사 15인
- 4.감사 2인

②이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의 이사 정수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④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 및 감사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 날인하는 일
- ②감사는 필요할 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회원 도서관 당 1인의 대표자 (이하 ‘대의원’이라 함)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사업계획의 승인
- 7.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

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다만 회비의 등급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본회의 설립자
 - 2.본회의 임원
 -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처 및 전문위원회

제38조(사무처)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이 된다.

③사무처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처의 직원 수, 직제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9조(전문위원회) ①본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변경사유서 1부

2.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